

『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0년 4월 22일

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행정안전국장 김 중 울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과의 통일성을 제고하고, 조문 상 띄어쓰기 오류 등을 교정하여 보다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을 “성실납세자 등” 으로 통일
(제명 변경, 안 제3조~제5조)
- 성실납세자 지방세 세무조사 “면제” 를 “유예” 로 변경
(안 제5조제2호가목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83조 및 제84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정 은

- 본 『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은
 -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임.
- 검토 결과,
 - 구미시는 「구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 제14조에 의거 영세·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고 있으며,
 - 현재 각 지자체별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규정상 세무조사 ‘유예’ 또는 ‘면제’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나, 이 규정은 단지 인센티브 부여기간동안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석상 혼란이 없도록 세무조사 ‘유예’로 개정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.
 - 그 밖에 개정하는 사항은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,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「구미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